

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(허가취소 등)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(반송)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

2012년 05월 15일

속 초 시 장



1. 제 목 :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업소 청문 통지
2. 청문대상 업소내역

업종	업 소 명	소 재 지	영업자	위반내용	행정처분
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	그린무역	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1400-2	김길수	- 6개월 이상 계속 휴업	영업소 폐쇄

3. 공고기간 : 2012. 05. 15 ~ 2012. 05. 29(15일간)
4. 법적근거 :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, 제32조,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 및 제14조 4항
5. 청문일시 및 장소 : 2012. 06. 11(월)18:00까지, 본청 3층 상담실)
6. 유의사항

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(영업소 폐쇄)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

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강원도지사에게 행정심판청구 및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

7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속초시 주민생활지원실 위생지도 : 주무관 정성수
[☎ 033)639-2324]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